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가단213511 판결 [이득상환금]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103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가단213511 판결

전문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변론 종결 2016. 6. 1.

판결 선고 2016. 6.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의 예금 및 수표금 지급 요구

(1) B는 C와 동거 내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피고에 개설된 예금계좌(계좌 개설일 2008. 11. 24., 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이 다.

(2) 이 사건 예금계좌에 2014. 1. 29. E 유한회사로부터 4,343,610원, F 유한회사로 부터 4,343,610원이 각 입금되어 잔고가 29,771,677원이 되었는데, 2014. 2. 1. C으로 부터 113,200,000원이, 2014. 2. 5. G으로부터 40,000,000원이 각 입금되고 그 사이에 일부 금액이 인출되어 잔고가 180,528,180원이 되었다.

(3) B는 2014. 2. 5. 위 예금 잔고 중 1억 8,000만 원을 1,000만 원 권 및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그 중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이하 '기존 사건 수표'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었다.

(4) 이 사건 예금계좌에는 2014. 2. 11.경 B 명의로 가입한 펀드의 해지수익금 60,350,663원(계좌번호 H), 29,862,418원(계좌번호 I), 30,704,991원(계좌번호 J)이 각 입금됨으로써 예금잔고가 121,446,252원이 되었다. 그 후 이자 등이 늘어나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잔고는 2014. 4. 7. 기준으로 122,275,668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이 되었다.

(5) B는 위 해지수익금이 입금된 직후인 2014. 2. 11.경 피고에게 기존 사건 수표금 및 이 사건 예금계좌 잔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예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6) 한편 원고는 B가 위와 같이 출금한 100만 원 권 수표 139장(수표번호 K ~L, 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다. 원고는 2014. 2. 5.경 중고차무역회사대표로 있는 M으로부터 환전요청을 받고 수수료 40만 원을 지급받아서 이 사건 각 수표를 취득한 다음 M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의 범죄행위

(1) C은 통신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O은 N의 이사로 채권매입의 알선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P유한회사, E 유한회사, F 유한회사(이하 통틀어 '특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Q, R, S, T, U, V, W은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에게 휴대폰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을 각 운영하는 사람들이며, Y은 X의 시스템영업본부장으로서 납품 및대금 결제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2) C은 Y 등과 공모하여, X가 위 협력업체들로부터 휴대폰 등을 납품받지 않아 협력업체들의 X에 대한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X 명의의 매출채권서류, 채권양도승낙서,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여 그에 기초한 가공의 납품대금채권을 특수목적법인에게 양도한 후, 특수목적법인이 차주로서 위 가공의 납품대금채권을 담보로 2008. 5.경부터 2014. 1. 27.경까지 사이에 피고 등 1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조8,00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이하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이라 한다)하였다. 그중 피고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약 1조 1,163억 원에 이른다.

(3) 위 편취금은 대부분 C과 공범인 S가 사용하였고, 현재 미상환원금은 약 2,900억원이며, 그 중 피고에 대한 미상환원금이 1,604억에 이른다. 해외로 도주한 C을 제외한 Y 등 다른 공범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20, 234(병합), 296(병합), 313(병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2014. 8. 27.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각선고됨으로써 유죄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선행소송 결과 및 판시법리

(1) B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예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0412, 서울고등법원 2015나12293, 대법원 2015다63312), 원고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2) 위 판결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가) B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가 B와 C이 동거 내지 사실혼 관계에 있기 이전에 개설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예금 등은 C이 피고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 또는 그 변형물을 B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도록 한것으로 추정되므로, C은 B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 등 채권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할 것인데, C은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으로 피고에 대해서 약 1,604억 원 이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해외로 도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C을 대위하여 그의 채무자인 B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 피고가 2014. 9. 23.자 준비서면에서 C을 대위하여 C과 피고 사이의 임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B는 C에게 이 사건 예금 등 채권을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C에게 이 사건 예금 등 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는 B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예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B와 C의 관계, 이 사건사기대출 범행이 발각되어 C이 2014. 2. 3. 해외로 도피한 직후 B가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기존 사건 수표를 포함하여 1억 8,000만 원을 출금한 점, C이 도피한 직후인 2014. 2. 6. B 명의의 펀드가 모두 해지되어 해지수익금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점, B 명의로 매수한 Z 아파트 또한 2014. 2. 11. 제3자에게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로서는 이 사건 예금 등이 C이 범죄행위로 취득하였거나 그 변형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예금 등은 피고 등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B가 범죄 피해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급제시기간이 도과한 이 사건 각 수표를 소지하고 있어 원고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자에 대하여 수표상, 민사상 권리가 소멸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수표의 액면금 상당의 금액만큼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의 액면 합계금 139,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이득상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이득상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어음 또는 수표상의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요하고(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1370판결 등 참조), 자기앞수표의 수표상 권리가 소멸함에 따른 이득상환청구권에 있어서이득이란 수표 발행의뢰인이 수표대금을 입금하는 자금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발행인이 수표대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수표대금 상당의 이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8481 판결 참조).

다. 판단

(1) 피고가 수표상 권리 소멸로 이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자기앞 수표를 발행한 발행인인 피고는 수표대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수표상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수표대금 상당의 이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소송 과정을 통하여 수표 발행의뢰인인 B가 신의칙상피고에게 수표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사건 예금 등 채권은 해지되어 C에게 양도될 상황이어서 B와 피고 사이의 자금관계는 사실상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수표대금 상당의 이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민법상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신의칙상 지급제시를 할 수 없는 이 사건 각 수표를 M으로부터 환전과정을 통하여 취득하였으므로, M을 상대로 한 민사상 기망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교환금 반환청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로도 이득상환청구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선일